

건강한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

2023년도

대구한의대학교 한방산업대학원
자체평가 보고서

2024. 1.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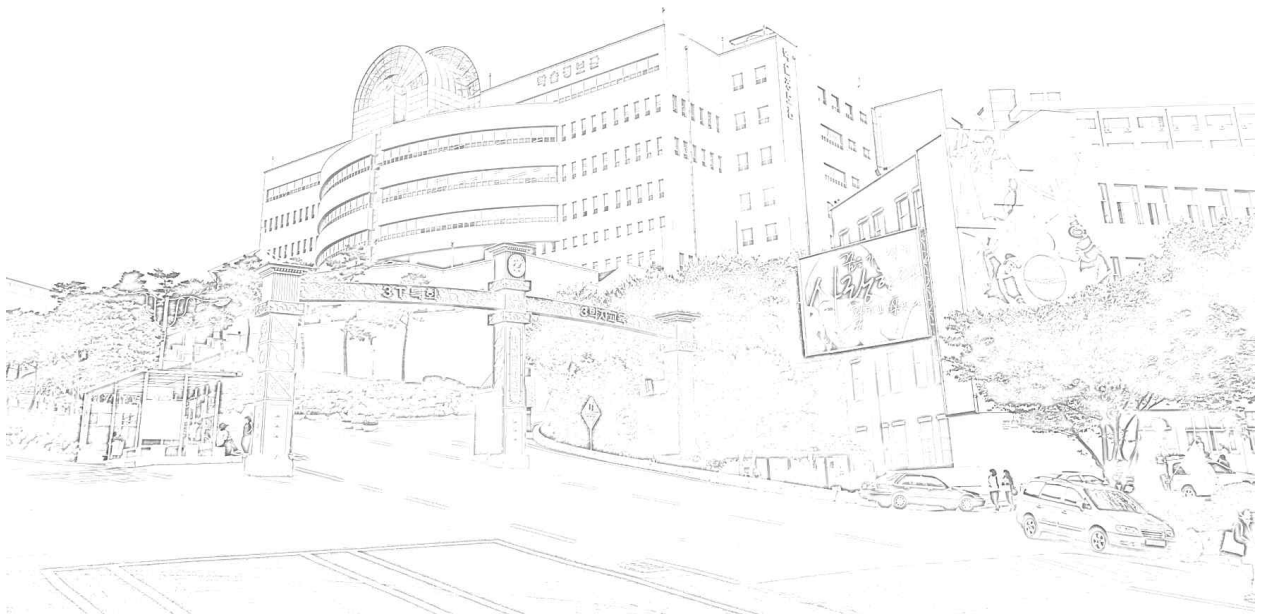
대구한의대학교

2023

대구한의대학교 한방산업대학원 자체평가보고서

본 보고서는 자체진단평가결과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 되었으며, 보고서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가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1월 25일



대구한의대학교 총장 (인)

대학원위원회

구분	소속	직위	성명	보직
위원장	한방식품학과	교수	김수민	일반대학원장
위원	중독융합학과	교수	김진숙	중독융합학과장
위원	한의학과	부교수	이봉효	한의학과장
위원	복지관리학과	부교수	이채식	복지관리학과장
위원	동물보건학과	조교수	김주완	동물보건학과장
위원	치유과학과	교수	김상호	치유과학과장
위원	보건학과	부교수	강성욱	보건학과장
위원	한방산업학과	부교수	권애란	한방산업학과장
위원	산림비즈니스학과	부교수	임월현	산림비즈니스학과장

자체평가연구위원회

구분	소속	직위	성명	담당영역
위원장	한방산업학과	부교수	권애란	총괄
위원	대학원장	교수	김수민	1~4영역
위원	푸드케어약선학과	교수	김미림	1~4영역
위원	대학원행정팀	팀장	성미향	1~4영역
위원	대학원행정팀	팀원	이영애	1~4영역

● 목 차 ●

I. 서론	3
1. 자체평가 목적 및 근거	3
1-1 평가목적	
1-2 추진근거	
1-2-1 관계 법령	
1-2-2 교내 관련 규정	
2. 자체평가 추진체계 및 추진방향	3
2-1 추진방법	
2-2 추진체계	
2-2-1 조직 구성	
2-2-2 자체평가연구위원회 구성	
2-3 추진방향	
3. 자체평가 대상 및 준거	5
3-1 평가대상	
3-2 평가내용	
3-2-1 평가내용	
3-2-2 평가준거	
II. 한방산업대학원 개황	7
1. 연혁	7
2. 학제 및 학과 현황	8
3. 구성원 현황	8
3-1 업무조직도	
3-2 구성원	
3-3 업무분장	
III. 평가 결과	11
1. 발전계획 및 특성화	11
1-1 교육목표	11
1-2 발전계획 및 특성화	11
2. 교육	19

2-1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	19
2-2 교수1인당 지도학생 수	19
2-3 강의만족도	20
3. 학생	23
3-1 신입생 충원율	23
3-2 재학생 충원율	24
3-3 학생복지	25
4. 연구	29
4-1 연구윤리	32
4-2 논문표절 방지시스템	37
4-3 장학금 지급률	38
5. 시설.설비	40
IV. 종합 및 논의	43

I. 서론

1. 자체평가 목적 및 근거

1-1. 평가 목적

- 우리 한방산업대학원은 2015년부터 2년 주기로 한방산업대학원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한방산업대학원 전반에 대한 개선점을 도출하고, 그 결과를 환류하여 한방산업대학원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원동력으로 삼고 있음
- 자체평가의 목적
 - 한방산업대학원의 자체평가를 통한 내실화 점검
 - 한방산업대학원 평가를 대비한 지속적인 노력 점검
 - 평가준거별 유지여부 점검
 - 한방산업대학원 정보공시지표 향상을 통한 대내외적 인지도 향상

1-2. 추진근거

1-2-1. 관련 법령

- 「고등교육법」제 11조의2(평가)
-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1-2-2. 교내 관련 규정

- 「대구한의대학교 자체평가에 관한 규정」

2. 자체평가 추진체계 및 추진방향

2-1. 추진방법

자체평가 사전준비 → 자체평가 기본계획 수립 → 자체평가 연구위원회 조직 구성 → 자체평가 추진 → 자체평가 결과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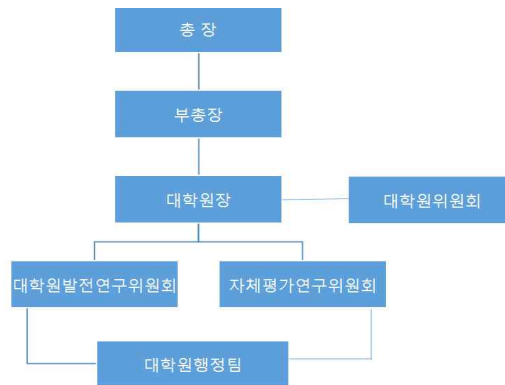
○ 자체평가 기본계획 수립

- 자체평가를 효율적이고 객관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사결정 체제의 확립과 자체평가 추진 조직 구성 및 운영 계획 수립함
- 기본계획 수립시 자체평가의 기본방침 및 목적, 자체평가의 범위와 대상 설정, 자

체평가의 추진일정 계획 수립, 추진 소요예산 계획과 확보 등 제반 기본계획을 수립함

2-2. 추진체계

2-2-1. 조직 구성



2-2-2. 자체평가연구위원회 구성

- 자체평가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적인 업무효율성을 고려하여 자체평가를 진행함.
- 「자체평가연구위원회」는 대학 전반에 대한 이해와 평가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교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은 대학평가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객관성 및 공정성을 겸비한 교원으로 임명함
- 자체평가연구위원회 기능
 - 자체평가 계획 수립 및 평가지표 개발
 - 평가 방법 및 기준 개발
 - 자체평가 보고서 작성
 - 기타 자체평가에 필요한 제반 사항 검토 및 결정

2-3. 추진방향

- 「2023 자체평가 기본계획」에 의거 자체평가 일정대로 진행하였음
- 수시로 관련부서 담당자들과 인터뷰를 통하여 자체평가 자료를 확인하였고 필요한 경우 구성원들에게 자체 평가목적에 대한 인식 및 평가준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와 자체평가에 대한 참여의식을 높임
-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는 「대학원위원회」의 검토 및 자문을 거침

년도	일자	추진내용
2023	'23.8.5	대학원 자체평가 기본계획 수립
	8.16	대학원 발전연구위원회 구성
	12.6	2023년 대학원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12.29	자체평가연구위원회 1차 회의
	'24.01.05	학과별 자체평가 진단, 자료보완
	01.12	자체평가연구위원회 2차 회의
	01.16	학과별 자체평가 진단, 자료보완
	01.19	행정부서 최종 자체평가 진단, 자료보완
	01.24	대학원위원회 보고
	01.25	자체평가보고서 총장 보고

3. 자체평가 대상 및 준거

3-1. 평가 대상

- 대학원 사명 및 발전계획
- 교육
- 학생
- 연구
- 시설.설비

3-2. 평가 내용

3-2-1. 평가 내용

- 2023년 자체평가는 ① 발전계획 및 특성화, ②교육, ③학생 ④연구 ⑤시설.설비로 총 5개 영역 13개 평가부분 13개 주요지표의 평가준거로 구성함.

3-2-2. 평가 준거

영역	평가부분	주요 지표	비고
1. 대학원 발전 계획 및 특성화	1.1 교육목표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정성
	1.2 발전계획 및 특성화	발전계획이 대학원의 교육이념, 교육목적, 교육목표에 부합하는가? 특성화 추진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있는가?	정성
2. 교육	2.1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전임교원의 수는 적정하며 전임교원의 강의담당 비율은 적정한가?	정량
	2.2 교수1인당 지도학생 수	교수1인당 지도 학생수는 적정한가?	정량
	2.3 강의만족도	학생의 학습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강의평가체제는 적절하며 강의만족도 수준은 적정한가?	정량
	2.4 학제 및 학사관리 환류 시스템	학제 및 학사관리 환류시스템은 적정한가?	정성
3. 학생	3.1 신입생 충원율	신입생 충원율은 적정한가?	정량
	3.2 재학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은 적정한가?	정량
	3.3 학생복지	학생복지는 적절하게 갖추고 있는가?	정성
4. 연구	4.1 연구윤리	연구윤리에 대한 교육 및 실천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정성
	4.2 논문표절시스템	교내 논문표절시스템을 가동하여 논문표절을 사전에 방지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정성
	4.3 장학금 지급률	학생 장학금 등의 지원체계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외부 장학지원을 적절하게 하고 있는가?	정량
5. 시설.설비	5.1 시설 및 설비 현황	대학원의 시설.설비 현황이 대학원생의 교육 및 연구를 수행하기에 적절하게 지원되고 있는가?	정량

Ⅱ. 한방산업대학원 개황

1. 한방산업대학원 연혁

- 2003. 7. 8. 전국 최초 한방산업대학원 신설 석사 20명 인가
- 2003. 10. 10. 초대 한방산업대학원장 김광중 박사 취임
- 2004. 3. 1. 한방산업학과 신설
- 2006. 2. 20. 제21회 졸업(석사 15명)
- 2006. 9. 1. 한방산업컨설턴트 자격증 내규 제정
- 2007. 2. 21. 제22회 졸업(석사 15명)
- 2007. 3. 1. 한방산업대학원장 신중규 박사 취임
- 2008. 2. 20. 제23회 졸업(석사 10명)
- 2008. 8. 20. 후기 졸업(석사 2명)
- 2009. 2. 20. 제24회 졸업(석사 21명)
- 2010. 2. 19. 제25회 졸업(석사 11명)
- 2010. 4. 15. 한방산업대학원 전문가포럼 발기인 대회 개최
- 2010. 5. 27. 제1회 한방산업대학원 전문가 포럼 개최
- 2010. 8. 16. 한방산업대학원장 김수민 박사 취임
- 2010. 10. 18. 제2회 한방산업대학원 전문가 포럼 개최
- 2011. 2. 18. 제26회 졸업(석사 12명)
- 2011. 8. 4. 한방산업대학원장 배만중 박사 취임
- 2011. 8. 19. 후기졸업(석사 1명)
- 2012. 2. 20. 제27회 졸업(석사 11명)
- 2012. 2. 23. 한방산업대학원장 신승렬 박사 취임
- 2012. 8. 20. 후기졸업(석사 2명)
- 2013. 2. 20. 제28회 졸업(석사 12명)
- 2014. 2. 20. 제29회 졸업(석사 10명)
- 2014. 3. 1. 한방산업대학원장 김수민 박사 취임
- 2014. 5. 23. 제3회 한방산업대학원 전문가 포럼 개최
- 2015. 2. 20. 제30회 졸업(석사 10명)
- 2015. 3. 1. 사회개발대학원 약선조리외식산업학과를 한방산업대학원으로 소속 변경
- 2015. 8. 20. 후기졸업 (석사 1명)
- 2016. 2. 19. 제31회 졸업 (석사 9명)
- 2016. 8. 19. 후기 졸업(석사 4명)
- 2017. 2. 20. 제32회 졸업(석사 12명)
- 2017. 8. 18. 후기졸업(석사 2명)
- 2018. 2. 19. 제33회 졸업(석사 9명)

- 2018. 8. 19. 후기 졸업(석사 4명)
- 2019. 2. 20. 제34회 졸업(석사 5명)
- 2019. 8. 18. 후기 졸업(석사 5명)
- 2020. 2. 20. 제35회 졸업(석사 7명)
- 2020. 8. 14. 후기 졸업(석사 4명)
- 2021. 2. 19. 제36회 졸업(석사 6명)
- 2021. 8. 20. 후기 졸업(석사 6명)
- 2022. 3. 1. 한방산업대학원 약선조리외식산업학과->푸드케어약선학과 변경
- 2022. 8. 19 후기 졸업(석사 10명)
- 2023. 2. 20 제38회 졸업 전기 졸업생(석사 6명)
- 2023. 8. 18 후기 졸업(석사 6명)

2. 한방산업대학원 학제 및 학과현황

(2022.4.1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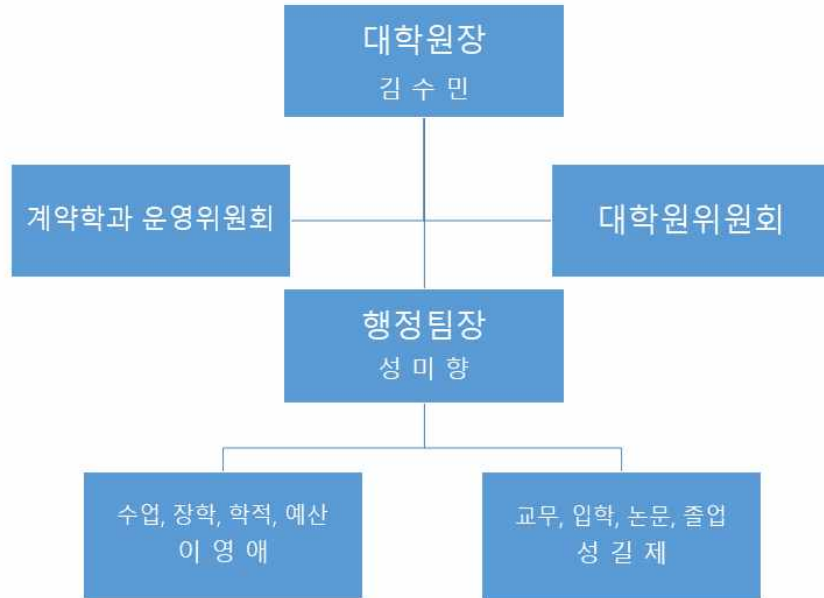
과정	정원	학과 및 전공	재학생수	휴학생수	재적생수
석사	12명	한방산업학과(한방식품산업전공, 한약재약리전공,한방피부미용전공)	19	3	22
		푸드케어약선학과	14	4	18
소계	12명	2개 학과	33	7	40

(2023.4.1 기준)

과정	정원	학과 및 전공	재학생수	휴학생수	재적생수
석사	12명	한방산업학과(한방식품산업전공, 한약재약리전공,한방피부미용전공)	13	3	16
		푸드케어약선학과	17	0	17
소계	12명	2개 학과	30	3	33

3. 한방산업대학원 구성원 현황

3-1. 조직도



3-2. 구성원

(2023. 12. 31. 기준, 단위: 명)

대학원장	행정직	조 교	합 계
1	3	2	6

3-3. 업무분장

직위	성명	개인별 분장업무	비고
대학원장	김수민	대학원업무 총괄	
팀장	성미향	대학원업무 진행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원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 학제개편에 관한 업무 ◦ 정원관리 ◦ 교무, 수업, 학적업무 전반의 관리 ◦ 지도교수 배정 관리 ◦ 입학전형의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 대학원 및 각 학과 행사계획 및 진행 ◦ 대학원위원회 운영 ◦ 생명윤리위원회(IRB) 운영 관리 ◦ 총장 지시사항 및 특별추진과제 수행 	
팀원	이영애	학적, 수업, 예산, 장학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원 예산 신청 및 지출관련 업무 ◦ 교과과정 개편 및 강좌 개설 관련 업무 ◦ 수강신청, 강사, 비전임 등 수업 관련 업무 ◦ 학습관리 및 현장학습관련 업무 ◦ 학생지도(상별 등) 관련 업무 ◦ 학적(휴·복학, 제적, 자퇴) 및 재입학 관련 업무 ◦ 재적생 변동상황 관리 및 각 기관 보고 ◦ 성적관리 및 학사관리에 관한 업무 ◦ 장학, 학비감면 및 한국장학재단 관련 업무 ◦ 고등교육통계 및 정보공시에 관한 업무 ◦ 생명윤리위원회(IRB)에 관한 업무 	
팀원	성길제	입학, 교무, 위원회, 논문, 졸업, 계약학과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학전형에 관한 제반 업무 ◦ 학위논문 계획 작성 및 관리, ◦ 졸업사정, 학위수여 관련 업무 ◦ 학칙 등 제규정 제정 및 변경 관련 업무 ◦ 학제개편(신설, 중지 등)에 관한 업무 ◦ 취업통계, 고등교육통계 및 정보공시에 관한 업무 ◦ 대학원위원회 및 계약학과운영위원회에 관한 업무 ◦ 계약학과 입학전형, 산업체 계약체결, 재직 확인 및 4대 보험, 교육부 운영현황 제출 	

Ⅲ. 평가 결과

1. 대학원 발전계획 및 특성화

1-1. 교육 목표

우리 대학원은 국가, 사회의 요구 및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 그리고 학문적 요구 등을 반영한 교육목적을 설정하고, 그 목적 실현을 위한 교육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모든 대학원 구성원들이 교육목표를 교육 실천의 지표로 삼도록 하는 등 대학원의 사명 완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리 한방산업대학원은 교육목적 달성을 위한 명료한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교육목표를 교육실천의 지표로 삼고 있다.

준거특성	정성	자체평가 결과	충족(P)
명료성	체계성	실천성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음	교육이념-교육목적-교육목표가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음	교육목적,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인재상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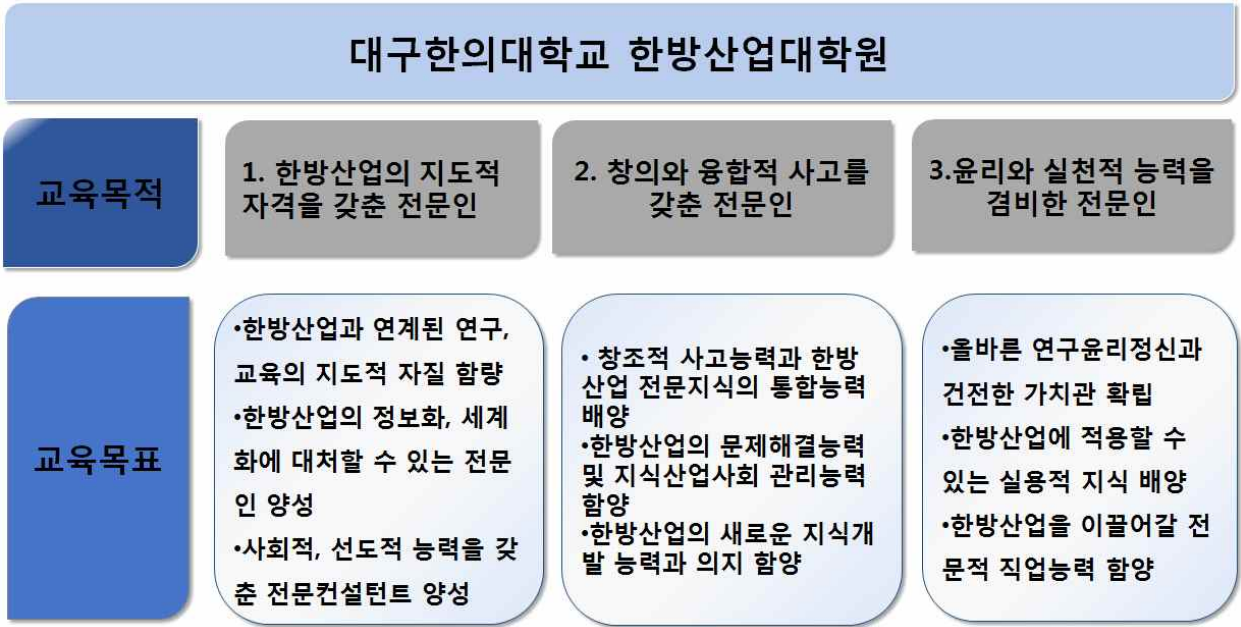
1-1-1. 교육목적

1. 한방산업의 지도적 자격을 갖춘 전문인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2. 창의와 융합적 사고를 갖춘 전문인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3. 윤리와 실천적 능력을 겸비한 전문인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1-1-2. 교육목표

1. 한방산업의 지도적 자격을 갖춘 전문인
 - 1) 한방산업과 연계된 연구, 교육의 지도적 자질을 함양한다.
 - 2) 한방산업의 정보화, 세계화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인을 양성한다.
 - 3) 사회적, 선도적 능력을 갖춘 전문컨설턴트를 양성한다.
2. 창의와 융합적 사고를 갖춘 전문인
 - 1) 창조적 사고능력과 한방산업 전문지식의 통합능력을 배양한다.
 - 2) 한방산업의 문제해결능력 및 지식산업사회의 관리능력을 함양한다.
 - 3) 한방산업의 새로운 지식개발 능력과 의지를 함양한다.

3. 윤리와 실천적 능력을 겸비한 전문인
 - 1) 올바른 연구윤리정신과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한다.
 - 2) 한방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 지식을 배양한다.
 - 3) 한방산업을 이끌어갈 전문적 직업능력을 함양한다.



1-2. 발전 계획 및 특성화

우리 대학원은 요구분석에 근거한 실현가능한 장단기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대학원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음. 또한 우리 대학원은 장단기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의 성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교육 및 대학원 운영에 반영하고 있음.

1-2-1.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수립

우리 한방산업대학원의 장단기발전 계획 및 특성화 계획은 대학구성원의 요구분석 등에 근거하여 수립되어 있다.

준거특성	정성	자체평가 결과	충족(P)
------	----	---------	-------

1-2-2.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의 평가

우리 한방산업대학원은 장단기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 평가를 통하여 그 결과를 교육 및 대학운영에 반영하고 있다.

준거특성	정성	자체평가 결과	총족(P)
계획수립여부		발전계획 적절성	특성화계획의 구체성
발전계획	특성화계획		
수립되어 있음	수립되어 있음	대학원의 교육이념과 교육목적, 교육목표에 부합하며 적절하다고 판단됨	특성화 추진을 위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음

○ 특성화 및 발전 추진의 필요성

- 가) 국가와 산업계에서 고도의 전문 지식과 기술력을 갖춘 창조적 인재를 절실히 필요로 하게 됨에 따라 고급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원의 역할 강조
- 나) 국가적으로 보면 국가균형발전 계획이 수립되어 지방 소재 대학이 지역산업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이 지역의 우수한 인적자원과 전문기술 그리고 지역기업을 집중하여 지역혁신체제(RIS)를 구축
- 다) 고도지식기반 사회로의 전환이 급속히 이루어진 현대 사회는 지식의 창출과 응용 및 보급이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지식산업사회이며 과거 어느 때보다 고도의 전문지식과 창의적인 연구능력을 길러주는 대학원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
- 라) 최근에는 사회적으로 학계 이외의 분야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면서 연구자에 대한 빠른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여 대학원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원 교육 수요의 다양화 및 졸업생의 진로 다양화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대학원 졸업생의 수요가 증가하고, 그로 인해 대학원 졸업생의 진로 역시 다양화되고 있다. 결국 대학원 교육은 다양해지는 학생들의 진로에 대응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 마) 석·박사 인력에 대한 기업연구소의 수요 증대
 - (1) 기업 경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석·박사급 고급인력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
 - (2) 중소기업과 개발 또는 공정 중심의 연구소 중 상당수는 석·박사인력을 채용하는 이유로 학부졸업생의 역량 부족을 지적
 - (3) 석·박사 인력을 채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 역량 대비 높은 임금수준
- 바)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한방산업의 기반 구축의 필요성에 따른 고급 인력 요구
- 사) 한방산업은 미래의 사회적 수요와 경제적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지식기반산업으로 세계 곳곳에서 새롭게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국 20여 시군에서 산·학·관·연이 협동으로 한방산업육성계획이 적극적으로 추진
- 아) 우리 대학은 경상북도와 경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한방의약품질 산업지구, 글로벌코스메틱 산업지구, 한방의료기기 산업지구 등 한방산업 특구의 중심에 위치

자) 한방산업 특구가 추진됨에 따라 한방기능성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을 연구 개발에 많은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요한 실정

○ 특성화 및 발전 추진 목표

- 가) 우리대학원의 보건복지, 교육, 한방산업이라는 특성화된 성격을 살리고, 우리 대학의 인재상인 “건강하고 창의적인 실천지성”과 우리 대학의 비전“지역사회와 함께 세계화를 선도하는 대학”에 맞추어 대학원 발전 및 특성화추진목표를 지역사회와 함께 세계화를 선도하는 전문인력 양성으로 수립
- 나) 지역사회와 함께 세계화를 선도하는 전문인력양성이라는 목표아래, 지역대학원이라는 현실에 입각한 특성화 전략을 수립하였는데, 특성화의 전체적인 체계도는 다음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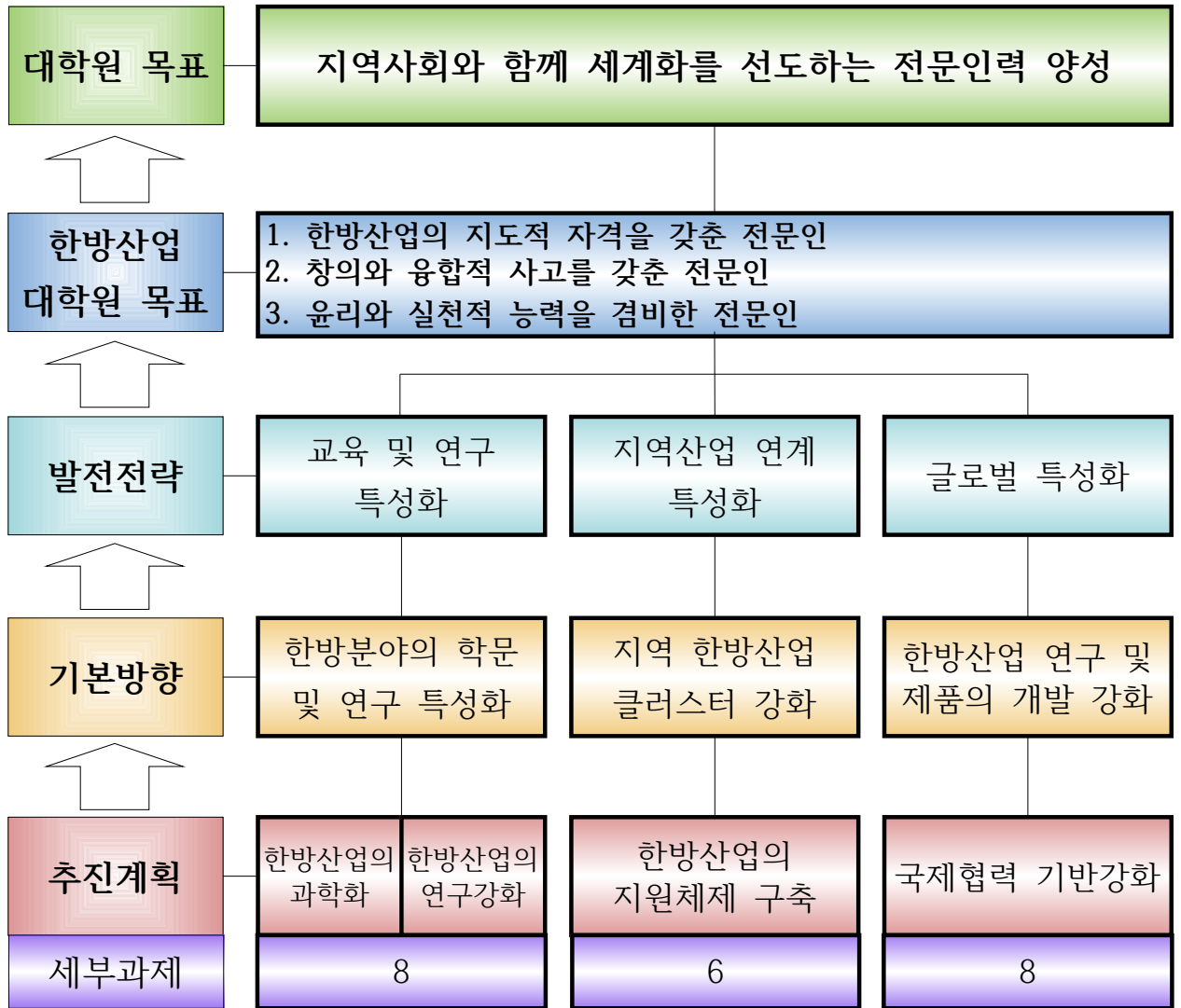


- 다) 우리 한방산업대학원의 특성화목표는 산학협동 교육 및 연구를 통하여 실용지식을 심화시키는 특성화된 교육과 더불어 실용연구를 강화함으로써 지역사회발전을 선도
- 라) 이와 같은 발전목표는 지역의 침단화 및 새로운 성장 동력의 발굴 육성에 필요한 혁신역량을 갖춘 인적자원의 양성과도 부합된다.

마) 지역사회산업의 고도화를 위하여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첨단기술의 개발 및 적용에 필요한 연구를 주도함으로써 지역산업의 발전을 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특성화 및 발전 전략 과제

1) 발전 및 특성화 추진 전략



2) 발전 및 특성화 추진 세부 실행 과제

가) 교육 및 연구 영역

발전전략	기본방향	세부 실행 과제
교육 및 연구 특성화	한방분야의 학문 및 연구 특성화	한방산업의 학문의 과학화
		한방산업 분야의 교수방법 개발지원
		한방산업 산업기술 인력의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시설/자료 활용 네트워크의 구축
		현장연계 실무 교육 강화
		한방산업 분야의 우수 연구논문의 지원 및 질적 강화
		한방산업 분야의 우수학생 확보 및 특성화 연구 지원
		연구 공간 및 연구 기자재의 확충

나) 지역사회 연계 특성화

발전전략	기본방향	세부 실행 과제
지역사회 연계 특성화	지역 한방산업 클러스터 강화	지역 한방산업 및 대학 연계의 교육 활성화
		지역 한방산업 연계 국가사업의 활성화
		본교를 중심으로 R&D 특구 사업의 활성화
		지역 한방산업의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
		연구 및 생산 장비의 공동사용 사업 구축
		연구개발 성과 DB 구축 및 홍보

다) 글로벌 특성화

특성화목표	발전전략	세부 실행 과제
글로벌 특성화	국제 사업 강화	외국인 우수 유학생 유치강화
		산학협력 체제 정비
		타 교육기관과의 연계 및 교류확대
		학생 국제 교류활동지원
		지역대학연합과의 교육 및 연구교류 활성화
		학술연구 정보 시스템 확충
		산학협력 중심 연구지원체계 강화
		외국인 교수 초빙 및 학생 국제 학술연구 지원

2) 과제별 연차별 추진계획

가) 교육 및 연구 영역

전략과제	세부 실행 과제	현재 (2023)	단기		중기 ('26~'28)	장기 ('29~'31)
			2024	2025		
교육 및 연구 역량강화	학사운영 및 관리 강화	○	○	○	○	○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	○	○	○
	고급 산업기술 인력의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	○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법 개편	○			○	○
	우수교원지원 및 다양한 연구 유도		○	○	○	○
	우수학생 확보 및 연구 지원	○	○	○	○	○
	학문간 교류학점 강화	○	○	○	○	○
	대학원 전용공간 및 기자재 확충		○	○	○	○

나) 지역사회 연계 특성화

전략과제	세부 실행 과제	현재 (2023)	단기		중기 ('26~'28)	장기 ('29~'31)
			2024	2025		
지역사회 연계 강화	수요자 중심의 커리큘럼 개편	○	○	○	○	○
	지역대학연합과의 교육교류 활성화		○	○		○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	○		○	○	○
	지역 기관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	○	○	○
	지역 산업 발전 및 협력 강화			○	○	○
	동문 네트워크 강화 및 지원	○	○	○	○	○

다) 글로벌 특성화

전략과제	세부 실행 과제	현재 (2023)	단기		중기 ('26~'28)	장기 ('29~'31)
			2024	2025		
글로벌 강화	외국인 우수 유학생 유치강화	○	○	○	○	○
	외국대학과의 연계 및 교류확대		○	○	○	○
	학생 국제 교류활동지원	○		○	○	○
	학생 국제 학술연구 지원		○	○	○	○
	국제교육교류센터 프로그램 참가 확대	○	○	○	○	○

3) 과제별 재원투자 계획

연차별 재원투자 계획 부분은 대학 학부에 비하여 미비하므로 대학과 협의하여 장기적
인 계획으로 투자계획 수립 필요

2. 교육

2-1.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

우리 대학원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한 결과 최근 2년간 전임교원의 강의담당비율이 평균 96%에 달하는 등 매우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 한방산업대학원은 교육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전임교원의 강의담당비율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있다.

준거특성	정량	자체평가 결과	충족(P)
------	----	---------	-------

2-1-1. 한방산업대학원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학년도	총 개설강의학점(A)	전임교원담당학점(B)	비율 (C=B/A*100)
2022	48	45	93.8%
2023	48	48	100%

○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이 2023년 현재 100%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강의의 질적 우수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됨.

2-2. 교수1인당 지도학생수

우리 대학원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한 결과 교수1인당 지도학생수가 3.9명으로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 한방산업대학원은 교육과 학생지도를 위해 적정한 지도학생수를 유지하고 있다

준거특성	정량	자체평가 결과	충족(P)
------	----	---------	-------

2-2-1 교수1인당 지도학생수

지도교수 인원수	지도교수 배정학생 인원수	지도교수별 학생수
4	23	5.7

○ 현재 지도교수 수는 4명이며, 지도교수 배정 학생 수는 23명으로 지도교수별 학생 수는 5.7명임. 이는 지도교수 1인당 대학원생 수가 5.7명으로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됨.

2-3. 강의만족도

우리 대학원은 대학원 수업 및 교육의 질 향상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교육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적절한 강의평가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조사된 강의만족도 수준 또한 꾸준히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 한방산업대학원은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해 정기적으로 교육만족도 조사를 시행하여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준거특성	정량	자체평가 결과	충족(P)
------	----	---------	-------

2-3-1. 한방산업대학원 강의평가 체제

○ 강의평가 항목

1	수업계획서는 수업에 대한 정보를 잘 제시하였다.	매우그 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2	수업내용이 해당교과목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담고 있었다.	매우그 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3	교수님은 다양한 수업방법(강의식, 토론식, 발표 등)을 활용하였다.	매우그 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4	수업을 통해 전공지식이나 지적능력향상 및 자기계발에 도움이 되었다.	매우그 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5	강의수준이나 지도방법이 교과내용을 이해하는데 효과적이며 적합하였다.	매우그 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6	성적평가기준은 객관적이고, 평가방식도 공정하였다.	매우그 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7	교수님은 수업시간준수, 출결관리 등 수업관리를 충실히 이행하였으며 휴강시에는	매우그 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사전고지하고 보강을 하였다.					않다
8	교수님은 학생들의 질문이나 과제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매우그 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9	이 수업을 통해 전공분야의 학문적, 전문적 지식 등을 배울 수 있었다.	매우그 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0	본 수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매우그 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1	기타 이 강의에 대한 건의사항, 좋은점, 문제점 등이 있으면 간략하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강의평가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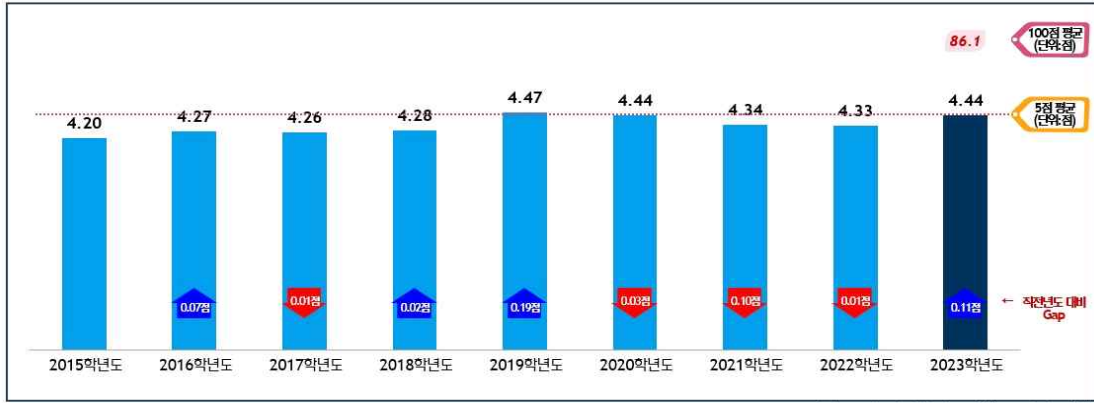
구분	수강인원	참여율	대상과정
전임교원	5명 이상	50% 이상	전 과정
비전임교원, 강사	3명 이상	50% 이상	전 과정

- 우리 대학원은 학생의 수업선택권을 보장하고, 수업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업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수업평가의 내용은 대학원 수업 및 교육의 질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 요구를 반영하고 합리적 수업평가가 되도록 함.

2-3-2. 강의만족도

2023년 대구한의대학교 재학 중인 대학원생의 종합 만족도 점수는
 5점 평균 기준 4.44점, 100점 평균 기준 86.1점임
 5점 평균의 경우 2022년(4.33점) 대비 0.11점 상승한 수준임

[연도별 종합 만족도]



(Base: 전체 응답자, N=85, 단위: 점)
 (100점 평균 환산법 : 1=0점, 2=25점, 3=50점, 4=75점, 5=100점)

**2023년 만족도 점수의 변별력 확보를 위해 100점 평균 추가함

※ 5점 척도 만점. 5점: 매우 좋다, 4점: 좋다, 3점: 보통이다, 2점: 좋지 않다, 1점: 매우 좋지 않다

대학원생의 종합 만족도의 경우 소속별로는 산학계약과정이 상대적으로 만족도 점수 높음
 석사보다는 박사가, 연령대별로는 30대의 만족도 높음

[영역별 종합 만족도]



(Base: 전체 응답자, N=85, 단위: 점)
 (100점 평균 환산법 : 1=0점, 2=25점, 3=50점, 4=75점, 5=100점)

※ 교육혁신원 교육성과관리센터 주관 대학만족도조사 결과 근거 작성

3. 학생

3-1. 신입생 충원율

우리 대학원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한 결과 최근 2년간 신입생 충원율이 100%에 달하는 등 매우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 한방산업대학원은 정부의 학생 선발 정책 및 대학의 교육목표 등에 근거하여 합법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여 충원하고 있다.

준거특성	정량	자체평가 결과	충족(P)
------	----	---------	-------

학년도	(B)			정원내 신입생충원율(% (B/A)*100
	입학정원(A)	입학인원(B)	지원자 수	
2022	12	12	18	100
2023	12	12	15	100

○ 교수들의 적극적인 학생유치 노력과 교육수요자 요구에 부합된 교육과정, 교육환경 개선 등으로 최근 2년 신입생 충원율이 100%에 이르는 등 매우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음.

3-1-2. 타 대학원 대비 한방산업대학원 현황비교

○ 타 대학원 대비 한방산업대학원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 현황 비교

학년도	전국(%)	대구.경북(%)	우리 대학(%)
2022	74.02	70.69	100.0
2023	72.19	69	100.0

3-2. 재학생 충원율 - 정원내

우리 대학원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한 결과 최근 2년간 재학생 충원율이 100%에 달하는 등 매우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 한방산업대학원은 타대학의 평균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준거특성	정량	자체평가 결과	충족(P)
------	----	---------	-------

3-2-1. 한방산업대학원 재학생 충원율

학년도	재학생 수(A)	학생정원(B)	정원 내 재학생 충원율 (A/B*100)
2022	32	28	110
2023	69	58	106.3

- 교수들의 적극적인 학생유치 노력과 교육수유자 요구에 부합된 교육과정, 교육환경 개선 등으로 최근 2년 재학생 충원율이 100% 이상에 이르는 등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음.

3-1-2. 타 대학원 대비 한방산업대학원 현황비교

- 타 대학원 대비 한방산업대학원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 현황 비교

학년도	전국(%)	대구.경북(%)	우리 대학(%)
2022	58.24	62	110
2023	59.66	65.23	106.3

3-3. 학생복지

우리 대학원은 <대학원생 권리장전>을 선포하여 대학원생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 확대하고 있으며, 기숙사 입사를 원하는 모든 학생을 수용하였고, 의료원 이용시 감액기준을 마련하는 등 학생복지에 노력을 기하고 있다.

준거특성	정성	자체평가 결과	충족(P)
------	----	---------	-------

3-3-1. 대학원 기숙사 수용인원

대학원 기숙사 수용인원			
학년도	기숙사지원자수	수용대학원생수	입사지원율
2022	2	2	100%
2023	0	0	0%

- 대학원생의 특성상 기숙사 입사를 원하는 학생들이 적으니 대학원생이 원하는 경우 기숙사 입사를 충분히 할 수 있음. 대학원생이 대학원 과정기간 동안 주거의 걱정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학원에서는 지원하고 있음.
- 생활관 관생 만족도 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생활관 만족도를 제고함.

3-3-2. 의료원 진료비 감액기준

순위	구 분	감액율(%)		비고
		본인	직계	
1	본 대학 재학생과 배우자	30	20	
2	본 대학 졸업생과 배우자	10	10	

- 대학원생과 가족의 건강에 대한 염려없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학의 부속 의료원의 진료비를 위와 같이 감액기준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음.
- 대학원생의 배우자, 자녀와 같은 직계가족에 대해서 감액비율을 추가하여 대학원생의 건강 복지를 지원하고 있음.

3-3-3. 대학원생 권리장전 선포

우리대학은 대학원생 권리장전을 선포하여 지적공동체인 대학원 구성원들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대학원생이 어떠한 신체적, 언어적, 성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하고, 연구하고, 근로할 권리를 선포하고 실천하고 있다.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생 권리장전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권리장전은 지적공동체인 대학원 구성원들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대학원생은 교직원과 함께 지적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존중받을 권리를 가져야 한다.

② 대학원생은 어떠한 신체적, 언어적, 성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하고, 연구하고, 근로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③ 대학원생은 성별, 학력, 국적, 나이, 장애, 종교 또는 정치적 성향 등으로 인해 차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2장 대학원생의 권리

제3조(자기 결정권) 대학원생은 사생활의 자유를 가지며, 연구와 학업은 건강, 안전, 혼인과 모성의 보호, 가족생활 등을 영위할 권리에 우선되지 않는다.

제4조(학업연구권) ① 대학원생에게 보장된 학업과 연구의 기회가 부당하게 박탈되어서는 안되며, 학위과정을 마칠 때까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학업이 중단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대학원생은 자신의 전공과 연구주제에 관해 전문적인 학업, 연구, 훈련 및 멘토십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대학원생은 학업과 연구에 필요한 연구 공간 및 학내 지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④ 대학원생의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진척 수준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며, 평가 결과는 서면 또는 면담으로 공유되어야 한다.

제5조(저작권) ① 대학원생은 연구 아이디어 제시, 연구 과정 참여 등 자신이 상당 부분 기여한 연구 출판물에 공저자로 등록될 권리가 있다.

② 대학원생은 해당 분야의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자신의 주도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연구방법을 기반으로 한 연구 결과에 대해 제1저자로서의 저작권을 가진다.

제6조(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 ① 대학원생은 자신의 연구 결과에 대해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 평가항목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 결과는 서면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③ 대학원생은 자신의 학업·연구결과 평가에 대해 평가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평가자는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할 책임을 갖는다.

제7조(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대학원생은 이 권리장전에서 명시된 권리들이 제도화되고 시행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대학원생은 대학원 자치조직을 구성·운영하고 그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업 및 연구와 관련된 대학원의 결정과 그 세부사항에 대해 알권리를 가진다.

제8조(조교의 권리) ① 대학원생은 조교로서 채용되는 과정에서 채용조건과 방식을 구체적으로 알 권리가 있고, 공정한 채용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대학원생과 학습조교, 연구조교, 연구과제 연구원 등으로 학문적·육체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명확한 근로시간, 근로내용, 임금기준의 정보를 제공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재정운영에 대한 알 권리) ① 대학원생은 본인이 참여하는 연구과제의 예산 및 지출 등 재정운용상황에 대해 알권리를 가진다.

② 대학원생은 학과·전공·프로그램별로 제공되는 조교 장학금 등 예산과 지출 등 재정운용 상황에 대해 알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대학원 학과·전공·프로그램의 재정운영은 투명하고, 일관되며, 이해하기 쉽게 공개되어야 한다.

제3장 대학원생의 보호

제10조(부당한 일에 대한 거부권) 대학원생은 자신의 교육 및 연구와 관계가 없는 부당한 일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제11조(지도교수 변경의 권리) ① 지도교수는 학위논문 및 연구지도에 주된 역할을 담당하여, 학생을 성실히 지도하여야 한다.

② 지도교수의 휴직, 파견 및 그 밖의 사유로 학생을 지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생이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학생이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희망하고, 대학원장(학과장 등)이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도교수의 확인절차를 생략하고, 학생 본인이 지도교수변경원을 학과에 제출하여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해결절차) ① 대학원생이 위에서 명시된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한 정보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위원회 등 문제해결기구가 열리는 경우 비공개 원칙이 보장되어야 하며, 대학원은 입증의 의무를 가지며 대학원생은 증거와 증인을 자유롭게 채택할 수 있다.

제13조(대학 구성원의 책무) ① 대학원의 모든 구성원은 이 권리장전에서 명시된 권리를 알고 이를 존중하고 실현해야할 책임을 가진다.

② 대학원은 지적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본 권리장전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그 밖의 권리) 대학원생의 권리는 이 권리장전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권리장전을 2016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4. 연구

4-1. 연구윤리

우리 대학원은 학위취득단계 시 연구윤리 교육 이수여부 및 연구윤리 준수 여부 검증시스템을 마련하여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사항을 마련하였다.

준거특성	정성	자체평가 결과	충족(P)
------	----	---------	-------

4-1-1. 연구윤리 교육

■ 학위수여 및 연구윤리 규정

- 가. 대학원 학위 수여는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등에 구체적으로 규정
- 나. 타 대학교 대학원과 큰 차이 없이 보편적 기준에 부합하게 규정
- 다. 최근 일부 대학에서 표절과 연구조작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통한 학위 취득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대학원 차원의 조사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증가
- 라. 본 대학원에서도 대학원 학칙에 부정행위로 인한 학위에 대하여서는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및 학위 취소가 가능
- 마. 또한, 그 동안의 학위취득시 연구윤리에 대한 별도의 검증 및 확인 절차가 없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사전적 검증 및 예방이 어려웠으나, 2015년 10월 29일 개정·공포한 대학원 학칙시행세칙에 연구윤리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명시하였다.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48조(논문제출절차 및 서류)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기간 내에 소정의 심사료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논문발표회 개최 및 심사용 논문 제출신청서
2. 논문(석사학위 청구논문 5부, 박사학위 청구논문 5부) (개정 2015.10.20.)
3. 학위논문 연구윤리 준수확인서 <신설 2015.10.20.>
4. 표절검사 결과 확인서 <신설 2015.10.20.>

제48조의2(연구윤리 준수) ①학위논문을 청구하는 자는 연구윤리를 준수하여 학위논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20.>

②연구윤리 준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연구윤리 준수에 관한 지침”으로 정한다. <신설 2015.10.20.>

바. 이 외에도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학원 학생이 학위논문을 작성함에 있어서 학문적 진실성을 유지하고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대학원 내규인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연구윤리 준수에 관한 지침”을 2015년 10월 29일에 제정·공포하였다.

대학원 학위논문 연구윤리 준수에 관한 지침

- 제 1 조(목적) 이 지침은 대구한의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대학원 학생이 학위논문을 작성함에 있어서 학문적 진실성을 유지하고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우리 대학교 대학원 학생의 학위논문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 3 조(학문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우리 대학교 대학원 학생은 학위논문을 작성함에 있어서 학문의 자유에 기초하여 창의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학위논문이 장기적으로 인류사회에 영향을 미침을 깊이 인식하여야 한다.
- 제 4 조(연구윤리준수) 학위논문을 청구하는 자는 학문의 기초와 창의적 연구를 통해 학문적 진실에 입각하여 학위논문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조, 변조, 표절, 대필 등의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제 5 조(용어의 정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대필”이라 함은 논문의 제목, 목차설정, 논문내용, 자료의 분석 및 정리 등 논문 대부분을 타인에 의존하여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 6 조(연구윤리준수확인서 제출) 학위청구 논문을 제출하는 자는 연구 윤리를 준수하여 학위논문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준수확인서(별지 제1호)를 작성하고,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학위청구논문 제출 기간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 7 조(학위논문 진실성 검증) ① 학위논문의 부정행위는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체적인 부정행위 내용 및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대학원장은 제보접수일로부터 15일내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부정행위가 사실인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보건복지대학원장을 포함한 대학원위원회 위원 3인과 해당분야의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약간 명 등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장은 보건복지대학원장이 된다.
- ③ 조사위원회는 조사 착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조사결과보고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 8 조(검증조치) ① 대학원장은 제7조 제3항의 조사결과보고서를 대학원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② 대학원위원회는 학위논문의 부정행위에 관한 조사결과보고서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결정사항에 근거하여 학위논문 작성자 및 지도교수에 대한 징계 사항을 결정한다.
- ③ 대학원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징계 결정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9 조(학위논문 부정행위자등의 징계처분) ①학위논문의 부정행위자가 재학생인 경우 대학원학칙에 따라 징계하고, 수료생인 경우 대학원 위원회 결정에 따라 일정기간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을 박탈한다.

② 학위논문 부정행위자의 지도교수에 대하여는 대학원위원회 결정에 따라 3년 이하 지도교수 자격을 정지한다. 다만, 이미 논문 지도를 하고 있는 학생에 대한 지도자격은 예외로 인정한다.

③ 학위논문의 부정행위자가 학위를 받은 자인 경우 대학원 학칙에 따라 총장은 학위수여를 취소한다.

제10조(적용범위)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에 의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사. 대학원 학위수여 자격요건에 소정의 연구지도 및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하도록 추가규정한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을 2016년 7월 1일에 제정·공포하였다.

4-1-2. 산학협력단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

우리 대학은 <산학협력단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사항을 마련하였다.

산학협력단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한의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 대학 내 연구개발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구성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①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 등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 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7. 12. 29.>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 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7. 12. 29.>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7. 12. 29.>
 -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적절하게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7. 12. 29.>
 -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행위
 -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행위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7. 12. 29.>
6.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기타 연구개발 활동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8.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법 제13조제4

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위반한 행위 <추가 2023.05.12.>

9.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추가 2023.05.12.>

10.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 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추가 2023.05.12.>

1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추가 2023.05.12.>

②“제보자”라 함은 부정한 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대학 또는 연구지원기관에서 알린 자를 말한다.

③“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본 대학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⑤“본 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⑥“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⑦“연구 관리부서”라 함은 교내·외연구비를 관리하는 산학협력단 산학연구지원팀을 말한다. <개정 2012. 05. 01><개정 2017. 12. 29.><개정 2023.05.12.>

제5조(검증시효) 연구윤리 제보 및 검증의 대상은 피조사자가 과거 행한 모든 연구를 대상으로 한다.

제6조(교육)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연 1회 연구윤리교육을 실시한다.<개정 2017. 12. 29.>

제2장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7조(기능)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7. 12. 29.>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예비조사와 본 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판정, 승인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에 관한 사항
5.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6. 연구수행과정에서의 갈등이나 분쟁 중재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구성) <개정 2017. 12. 29.>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제6조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필요시 비상설로 운영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23.05.12.>

③ 위원회의 간사는 산학연구지원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05.12.>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임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운영기간 동안으로 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장 검증 절차

제10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①제보자는 산학협력단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9.><개정 2023.05.12.>

②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1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①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개정 2017. 12. 29.>

②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4조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삭제 2017. 12. 29.>

③예비조사는 연구 관리부서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①예비조사의 결과는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과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예비조사 결과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의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자료

제13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①본 조사는 총장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 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본 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③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30일 한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장 조사위원회

제14조(조사위원회의 구성) ①조사위원회는 총장이 임명(위촉)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 12. 29.>

②조사위원회에는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를 50% 이상으로 하되 이 중 소속이 다른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 인사를 30%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 ③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 ④본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익을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제15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조사위원회는 제보자 . 피조사자 .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 ②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 제16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①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 ②총장은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 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 ③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④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기관장과 관계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총장의 승인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 제17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①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 ②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 ③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한다. <개정 2017. 12. 29.>
- 제18조(본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①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결과보고서 (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제출한다.
- ②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 내용
 2. 조사 결과 <개정 2017. 12. 29.>
 3.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의혹 및 관련 연구과제
 4.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 부정행위 의혹의 사실 여부
 5.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개정 2017. 12. 29.>
 6.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
 7. 조사위원 명단
- 제19조(판정)** ①조사위원회는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최종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 ②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0조(재심의)**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 할 수 있다. 재심이의 절차는 본 조사 절차에 준한다. <개정 2017. 12. 29.>

제5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21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보고) ①최종보고서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해당 연구과제를 지원한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상급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과정 중이라도 즉시 연구지원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연구 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22조(결과에 대한 조치) ①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조사위원회는 총장에게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 관련자가 본교 소속이 아닌 경우에는 그 부정행위의 소속 기관장에게 판정결과를 통보한다. <개정 2023.05.12.>

②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23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위원회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 . 조사위원 . 증인 . 참고인 .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4-2. 논문표절 방지시스템

우리 대학원은 무상으로 제공하는 표절검사 프로그램인 카피킬러를 이용한 표절검사결과확인서를 논문완성본 제출시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연구윤리 준수 여부를 객관적·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준거특성	정성	자체평가 결과	충족(P)
------	----	---------	-------

○ 연구윤리 관련 프로그램 운영

- 가. 2015학년 제2학기부터 대구한의대학교 학술정보원에서는 대학연구윤리 강화를 위하여 교직원과 대학원생에게 표절검사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
- 나. 그리고 2015학년도 제2학기부터 대학원 학위논문 심사대상자는 표절검사 프로그램의 표절검사결과확인서를 출력하여 논문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 논문지도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논문완성본 제출시 표절검사결과확인서의 표지 확인란에 지도교수가 확인·날인하여 대학원행정팀으로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연구윤리 준수 여부를 객관적·효율적으로 관리
- 다. 향후에도 우리 대학원에서는 연구부정행위 없는 건전한 학술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시행해 나아갈 예정이다.

표절검사의 기준!! 카피킬러캠퍼스

'카피킬러'는 표절 없는 바람직한 학술문화를 지원합니다



4-3. 장학금 지급률

우리 대학원은 대학원생의 장학금 지원체계가 적절히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2년간 1인당 평균 지급 장학금이 1,686천원이다. 특수대학원의 경우는 각 대학원마다의 특성화된 부분이므로 타 한방산업대학원과의 비교를 할 수 없으므로 적당하다고 보여진다.

준거특성	정량	자체평가 결과	충족(P)
------	----	---------	-------

4-3-1. 장학금 지급률

(금액단위 : 천원)

공시년도	재학생 수(A)	교외장학금(B)	교내장학금(C)	계(D=B+C)	재학생 1인당 장학금(E=D/A)
2022 (2021학년도)	28	-	41,317	41,317	1,475
2023 (2022학년도)	-	-	39,888	39,888	-

- 한방산업대학원의 장학금 지급율은 2021년 재학생 1인당 장학금이 1,475천원이며, 2022년은 대학정보공시에서 재학생 및 1인당 장학금 비공시
- 교외장학금은 확충되지 못하였으나 특수대학원으로서의 재학생 1인당 장학금은 적정하게 지원하고 있다.

5. 시설.설비

5-1. 시설.설비현황

우리 대학원은 대학원생의 원활한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에 충분한 강의실과 실험실을 확보하고 있으며, 대학원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학생회관 등의 부대시설도 지원되고 있다.

준거특성	정량	자체평가 결과	충족(P)
------	----	---------	-------

소속학과명	호실	용도구분	전용 면적(m ²)
한방산업학과	11-0203-0	학생회관	36
한방산업학과	11-0402-0	강의실	84.24

한방산업학과	11-0405-0	일반수업용 실험실	168.48
한방산업학과	11-0406-0	일반수업용 실험실	84.24
한방산업학과	11-0406-1	일반수업용 실험실	28.08
한방산업학과	11-0407-0	일반수업용 실험실	56.16
한방산업학과	11-0408-0	일반수업용 실험실	86.58
한방산업학과	11-0411-0	일반수업용 실험실	84.24
한방산업학과	41-0201-0	일반수업용 실험실	91.2
한방산업학과	41-0204-0	일반수업용 실험실	27
한방산업학과	41-0205-0	일반수업용 실험실	75.6
한방산업학과	41-0211-0	강의실	90
한방산업학과	41-0212-0	일반수업용 실험실	126
한방산업학과	41-0213-0	일반수업용 실험실	75.6
한방산업학과	41-0216-0	일반수업용 실험실	111.6
한방산업학과	41-0301-0	일반수업용 실험실	54
한방산업학과	41-0302-0	강의실	108
한방산업학과	41-0B10-0	학생회관	36
한방산업학과	41-0303-0	강의실	54
한방산업학과	41-0304-0	학생회관	54
한방산업학과	41-0305-0	일반수업용 실험실	126
한방산업학과	41-0305-1	일반수업용 실험실	14.4
한방산업학과	41-0306-0	일반수업용 실험실	86.4
한방산업학과	41-0307-0	행정시설	36
한방산업학과	41-0309-0	일반수업용 실험실	126
한방산업학과	41-0310-0	일반수업용 실험실	28.8
한방산업학과	41-0311-0	일반수업용 실험실	91.2
한방산업학과	41-0316-0	일반수업용 실험실	86.4
한방산업학과	41-0317-0	일반수업용 실험실	63
한방산업학과	41-0318-0	일반수업용 실험실	108
한방산업학과	41-0319-0	강의실	108
한방산업학과	41-0B11-0	학생회관	45
약선조리.외식산업학과	41-0501-0	일반수업용 실험실	108
약선조리.외식산업학과	41-0501-1	일반수업용 실험실	19.2
약선조리.외식산업학과	41-0502-0	일반수업용 실험실	86.4
약선조리.외식산업학과	41-0504-0	일반수업용 실험실	32.4
약선조리.외식산업학과	41-0505-0	강의실	32.4
약선조리.외식산업학과	41-0506-0	일반수업용 실험실	93.6
약선조리.외식산업학과	41-0506-1	일반수업용 실험실	32.4
약선조리.외식산업학과	41-0506-2	일반수업용 실험실	32.4
약선조리.외식산업학과	41-0508-0	일반수업용 실험실	36
약선조리.외식산업학과	41-0509-0	일반수업용 실험실	108

약선조리.외식산업학과	41-0509-1	일반수업용 실험실	19.2
약선조리.외식산업학과	41-0510-0	일반수업용 실험실	120
약선조리.외식산업학과	41-0516-0	강의실	64.8
약선조리.외식산업학과	41-0517-0	강의실	48.6
약선조리.외식산업학과	41-0518-0	일반수업용 실험실	90
약선조리.외식산업학과	41-0519-0	일반수업용 실험실	32.4
약선조리.외식산업학과	41-0522-0	일반수업용 실험실	32.4
약선조리.외식산업학과	41-0523-0	일반수업용 실험실	97.2
약선조리.외식산업학과	41-0524-0	일반수업용 실험실	86.4
약선조리.외식산업학과	41-0524-1	일반수업용 실험실	19.2
약선조리.외식산업학과	41-0525-0	일반수업용 실험실	19.2
약선조리.외식산업학과	41-0B09-0	학생회관	36
대학원	11-0106-0	강의실	58.32
대학원	11-0803-0	강의실	84.24
대학원	11-0810-1	강의실	56.16
대학원	11-0813-0	학생회관	28.08
대학원	11-0816-0	강의실	60.84

IV. 종합 및 논의

1. 발전계획 및 특성화

□ 강점

- 우리 대학원은 국가, 사회의 요구 및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 그리고 학문적 요구 등을 반영한 교육목적을 설정하고, 그 목적 실현을 위한 교육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모든 구성원들이 교육목표를 교육 실천의 지표로 삼도록 하는 등 대학원의 사명 완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 한방산업이라는 특성화된 성격을 살리고, 우리 대학의 인재상인 “건강하고 창의적인 실천지성”과 우리 대학의 비전 “지역사회와 함께 세계화를 선도하는 대학”에 맞추어 대학원 발전 및 특성화추진목표를 지역사회와 함께 세계화를 선도하는 전문인력 양성으로 수립.
- 우리 대학원은 요구분석에 근거한 실현가능한 장단기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대학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음. 또한 우리 대학은 장단기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의 성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교육 및 대학원 운영에 반영하고 있음.
- 대학 경영 및 전반에 관한 자체평가를 2년 주기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학전반의 주요지표가 향상됨.

□ 개선점

-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와 제한된 재정여건 속에서 안정적인 대학 구조개혁 및 특성화를 주도하기 위한 평가 및 환류시스템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대학원발전계획의 영역별 주요과제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2. 교육

□ 강점

- 최근 2년간 전임교원의 강의 담당비율이 100%에 근접하는 매우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및 대구.경북권과 비교시 월등히 높은 비율임.
- 교수1인당 지도학생수가 5.7명으로 적절한 수준임.
- 대학원 수업 및 교육의 질 향상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교육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적절한 강의평가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교육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교운영 전반에 반영하고 있음. 최근 2년간 조사된 강의만족도 수준 또한 높은 편임.

□ 개선점

- 사회와 산업체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개발.확대하여 교육만족도 향상이 필요함.

3. 학생

□ 강점

- 사회 요구에 부응하고 산학협력을 중시하는 교과과정을 운영하여 대학원의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충원율은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음. 최근 2년간 신입생 충원율 100%는 타 대학과 비교시 매우 우수한 결과임.
- 우리 대학은 <대학원생 권리장전>을 선포하여 대학원생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 확대하고 있으며, 기숙사 입사를 원하는 모든 학생을 수용하였고, 의료원 이용시 감염기준을 마련하는 등 학생복지에 노력을 기하고 있음

□ 개선점

- 신입생충원율과 재학생 충원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함.
- 취업자가 재학생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점을 고려하여, 산업체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이 이루어져 교육만족도 향상이 필요함.

4. 연구

□ 강점

- 학위 논문 작성에 있어서 학문적 진실성을 유지하고 연구윤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연구윤리 준수에 관한 지침」 및 「산학협력단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또한 필수이수과목 및 졸업자격으로 지정하고 있음.
- 논문표절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 「논문표절검사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연구윤리를 최우선에 두고 있음.

□ 개선점

- 최근 2년간 대학원생들의 연구 효율을 위하여 안정적인 장학금 확보를 통한 장학금 지급율 인상에 대하여는 학과 및 대학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여짐.
- 2020년도부터 연구윤리 수업은 이러닝 수업을 추가하여 대학원생이 원하는 시간에 수강할 수 있도록 수업방식을 완화함.

5. 시설.설비

□ 강점

- 대학원생의 원활한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에 충분한 강의실과 실험실을 확보하고 있으며, 대학원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학생회관 등의 부대시설도 지원되고 있음.

□ 개선점

- 대학원 수업 및 교육의 질 향상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교육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설비의 지원이 필요함.

작성 : 성길제(인)

확인 : 성미향(인)